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4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복기왕 · 여기구 · 이상식
김우영 · 이연희 · 임호선
조계원 · 박용갑 · 최혁진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제1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p> <p>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3. ~ 12.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p> <p>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의2. (생 략)</p> <p><u><신 설></u></p> <p>4. ~ 8.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p> <p>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u></p> <p>3.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u>3의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u></p> <p>4. ~ 8.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